

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4년 12월 8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4년 12월 9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· 제116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(2004년 12월 15일)
상정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환경위생과장 김영국)

□ 제안이유

- 건강기능식품의 안정성 확보와 품질향상 및 건전한 유통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이 제정(2002. 8. 26, 법률 제6727호)되고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, 이에 맞추어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6조 규정에 의거 영업신고를 한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도 영업자의 범위에 포함함.(안 제2조)

-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도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함.(안 제4조)
- 기금운용관을 식품위생업무 담당국장에서 식품위생업무 담당과장으로 변경함.(안 제11조제1항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○ 기금운용관이 국장에서 과장으로 바꾸는 타당한 이유가 있나요?	○ 기금은 시의회에서 승인받는 사항이고 기금심의위원회가 있으므로 기금운용관을 국장으로 하는 것보다 과장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며 타시군에서도 과장으로 하는 추세입니다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331호
의결 년월일	2004.12.23 (제116회)

제출년월일 : 2004. 12. 8.
제출자 : 부천시장

□ 제안이유

- 건강기능식품의 안정성 확보와 품질향상 및 건전한 유통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이 제정(2002. 8. 26, 법률 제 6727호)되고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,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가.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6조 규정에 의거 영업 신고를 한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도 영업자의 범위에 포함함.(안 제2조)
- 나.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도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함.(안 제4조)
- 다. 기금운용관을 식품위생업무담당국장에서 식품위생업무담당 과장으로 변경함(안 제11조제1항)

부천시조례 제 호

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중 “법 제21조제2항”을 “법 제21조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 제4조제2항”으로, “법 제22조”를 “법 제22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 제6조”로 한다.

제4조중 “법 제65조”를 “법 제65조 및 제71조”로 한다.

제5조중 “법 제65조제4항”을 “법 제65조제4항·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 제37조제4항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제1호중 “식품위생업무담당국장”을 “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”으로 하고, 동항 제2호를 삭제한다.

제13조중 “영 제7조”를 “영 제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영업자”라 함은 <u>법 제21조제2항</u>이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<u>법 제22조</u>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은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.</p> <p>2.·3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<u>법 제21조제2항</u> 및 <u>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</u>----- <u>법 제22조</u> 및 <u>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</u>-----.</p> <p>2.·3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조(기금의 조성)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p>1. <u>법 제65조</u>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</p> <p>2.~4. (생략)</p>	<p>제4조(기금의 조성) ----- -----.</p> <p>1. <u>법 제65조</u> 및 <u>제71조</u>----- -----</p> <p>2.~4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조(기금의 귀속절차) <u>법 제65조 제4항</u> 및 <u>식품위생법시행령</u>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<u>제39조의2</u>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귀속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5조(기금의 귀속절차) <u>법 제65조 제4항</u>·<u>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</u>----- ----- 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1조(기금관리공무원)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.</p> <p>1. 기금운용관 : <u>식품위생업무담당국장</u></p> <p>2. 분임운용관 : <u>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</u></p> <p>3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1조(기금관리공무원) ①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</u></p> <p><삭제>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3조(용자대상) 기금의 용자대상은 <u>영 제7조</u>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로서 관내에서 시설개선 또는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한 기기구입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.</p>	<p>제13조(용자대상) ----- -- <u>영 제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조</u>----- ----- -----.</p>